

2025 강원 청년통계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 모집 공고

강원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에서는 「2025 강원 청년통계」 기간제근로자(업무보조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 6. 16.
강원지방통계청장

1. 모집인원 및 계약기간

모집 구분	모집 인원	계약 방법	계약 기간	수당	비고
업무 보조원	1명	근로 계약	2025. 7. 21. ~ 12. 19. (기간 중 131일)	80,240원/1일 (1일 8시간 근무 기준)	유급휴일 27일 포함 기간 중 월차 5일 발생

- 주1) 천재지변이나 통계기획 변경, 업무량 등으로 변화가 있는 경우 사용기간이 축소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며, 부서 사정에 따라 모집인원 및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주2) 이전 조사에서 “불량”으로 평가받은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주3) 개인사정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2주 전에 통보해야 함

2. 담당업무

구분	주요 담당업무
업무보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행정자료 수집 및 내용검토통계표 및 보고서 작성 보조통계표 편집 및 그래프 작성보고서 오탈자 교정 등 내용검토기타 보고서 작성 관련 행정업무 지원

3. 근로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및 형태 : 주 5일제(40시간), 1일 8시간(9시~18시) 근무
- 보수
 - 일 급 : 80,240원

4. 계약 운영 방식

대상	수당지급	수당방법
업무보조원	근로자 (근로계약)	- 1개월 이상이면 4대보험, 1개월 미만이면 2대보험 가입 - 주 5일 근무 시 유급휴일 수당 지급(공휴일 포함)

5. 채용(모집)방법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2차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

- 2차 면접전형 점수가 높은 자
- 2차 면접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
-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1차, 2차 전형에 각각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 부여

5점	10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 공로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 공로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 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 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 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 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및 「고엽제후유의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 부여

5점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응시 자격요건(모두충족)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이 가능한 자
- ※ 근무장소: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춘천시 후석로440번길 64)
-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사용 가능자
- 이종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통계청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타 관련법령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 채용서류 미비나 거짓 작성하지 않은 자
-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이상인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다자녀보육가구: 20세미만의 자녀를 2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6. 전형일정

- (1차 서류합격자 발표) 2025. 6. 30.(월) 15:00 이후
 - 강원지방통계지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regional/gw/index.action>)에 게시
 - (2차 면접전형): 2025. 7. 2.(수) 13:30
 - 면접장소: 강원지방통계지청 4층 공용회의실
 - 기관 사정에 따라 2차 면접전형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공고): 2025. 7. 3.(목) 18:00 이후
 - 강원지방통계지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regional/gw/index.action>)에 게시
-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연락 예정

7.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6. 16.(월) ~ 6. 27.(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방문, 이메일 등
 - 방문접수는 평일 9~18시 내에만 가능
 - 이메일: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수신에 한함
 - 제출서류는 반드시 출력하여 본인 서명 후 하나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
 -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접수담당자

기관명	담당자	주소	연락처
강원지방통계지청	이슬미	춘천시 후석로440번길 64 (4층 지역통계과)	사무실: 033-258-3749 e-mail: seoul0714@korea.kr F A X: 033-258-3767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붙임1]
- 자기소개서 1부 [붙임2]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붙임3]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붙임4] [행정정보공동이용 포털 이용 시]
- 공정채용확인서 [붙임6] [최종합격자에 한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 취업지원 가점부여자 중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는 서류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회조사분석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운용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사회계운용사, 워드프로세서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주민등록등본),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선택사항)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확인 가능합니다.

☞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선택해야 인정

9.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이전 1년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한 모든 통계조사 또는 직전 동일 조사에서 조사원 사후 평가가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보수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본조사 중도포기에 해당하는 보수 감액 지급 및 향후 2년간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모집을 제한함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6)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됨.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직자가 부담할 수 있음
- 면접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자 기 소 개 서

업무명	2025 강원 청년통계	지원분야	업무보조원
생년월일		성명	

※ **(유의사항)** 본 란은 업무경력, 자신의 장점, 지원동기 등을 위주로 자유롭게 작성. 단,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서식변경 금지

- 글씨체: 휴먼명조
- 글자크기: 15p
- 1장 이내로 작성

【붙임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5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